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1803

제출연월일: 2024. 7. 16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국민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조의2"로 한다.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6조의8제1항 중 "국무총리는"을 "정부는"으로, "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"를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국민 등이"로 한다.
제74조의3제1항제2호라목 중 "「의료법」 제17조"를 "「의료법」 제17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의8(안전관리헌장) ① <u>국무</u>	제66조의8(안전관리헌장) ① <u>정부</u>
<u>총리는</u> 재난을 예방하고, 재난	느
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	
화하기 위하여 <u>재난 및 안전관</u>	<u>국가와 지방자</u>
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	<u> 치단체, 국민 등이</u>
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	
장을 제정 • 고시하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4조의3(정보 제공 요청 등) ①	제74조의3(정보 제공 요청 등) ①
행정안전부장관(제14조제1항에	
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	
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	
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시ㆍ	
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	
장(제16조제1항에 따른 시·도	
대책본부 또는 시・군・구대책	
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	
본부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	
서 같다)은 재난의 예방・대비	
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	
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	
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	
사람과 생명 • 신체에 대한 피해	
발생이 우려되는 사람(이하 "재	

난피해자등"이라 한다)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 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 장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 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자, 그 밖의 법인·단체 또는 개 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 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

- 1. (생략)
- 2.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·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

가. ~ 다. (생 략)

- 라. <u>「의료법」 제17조</u>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, 전화번호 및 같은 법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
- ② ~ ⑩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2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<u>「의료법」 제17조의2</u>
② ~ ⑩ (현행과 같음)